

「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01일, 이명순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0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11월 0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명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·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 및 포상(안 제3조 ~ 제4조)
- 보조금관련 준용규정(안 제5조)
- 중복지원 금지 (안 제6조)
- 시행규칙 관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, 기존의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를 지원·육성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3조, 제4조에서는 지원 및 포상 규정을 안 제5조, 제6조에서는 보조금관련 준용규정과 중복지원 금지를 각각 정하였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